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29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26,75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농어촌특별세 306,330원 합계 7,990,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가. 원고는 2010. 12.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0.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채권(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유동화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1. 1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됨을 전제로 산출한 취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45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00원의 합계 5,1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이므로 개정 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26,75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농어촌특별세 306,330원의 합계 7,990,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가. 원고의 주장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률로 지방세법 제1조 내지 제154조와 취득세의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률과 과세표준, 세율, 세액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근거를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가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즉,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취득세 7,026,750원 중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26,750원, 농어촌특별세 306,330원 중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81,33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중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5,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2,670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과세의 근거법률이 '지방세법 제1조 내지 제154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2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법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본세와 가산세의 액수, 그 각 세율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부과의 근거법률, 세율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액 중 본세와 가산세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가산세액 중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피고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조 내지 제154조'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근거법률을 적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세율,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과 세율, 가산세 및 본세의 액수 및 그 산출근거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등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서면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별지 1)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5-5 경남아너스빌 2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공동주택(부대시설(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방제실, 공용창고)) 1,952.04㎡

지하2층 공동주택(부대시설(주차장, 관리실, 주민회의실, 공용창고)) 1,952㎡

지하3층 공동주택(부대시설(주차장, 근린생활용창고, 상가번영회, 공용창고)) 1,952.47㎡

지하4층 공동주택(부대시설(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공용창고)) 1,655.92㎡

1층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경비실, 엠디에프실) 1,362.87㎡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1,561.52㎡

3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4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5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6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7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8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9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10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11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12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13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14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15층 공동주택(아파트(8세대)) 983.36㎡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19호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53.58㎡

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5-5 대 2,248.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248.8분의 9.300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3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